
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)을 이용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안내 (민원인용)

1. 매수자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등록 절차

- 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대상인 경우 아래와 같이 매도 / 매수자 / 공인중개사 탭에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.

물건		매도/매수자/공인중개사		신고내역 상세조회			
				신정인변경	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		
접수번호	0000106	접수일자	미접수(임시저장)				
<input type="radio"/> 매도인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매수인 <input type="radio"/> 공인중개사							
구분	성명	주민(법인)등록번호	국적	주소	지분비율	연락처	
내국인	이매수	650101-2222222	대한민국	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		02-3333-3333	수정
		매도인 등록/추가		매수인 등록/추가		공인중개사 등록/추가	

- ② 물건 및 매도/매수자/공인중개사 정보를 입력 한 후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버튼을 클릭합니다.

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 등록

자금조달계획대상 물건 총금액	300,000,000 원	매수자 자금조달계획 합계	0 원
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	-----

매수인 목록

성명	주민(법인)등록번호	주소	전화번호	제출구분	자금합계	
이매수	6501012222222	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00길	02-3333-3333	-	0	-
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6항 및 제7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을 신고 합니다.

닫기

- ③ 위의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 등록 화면이 나타나면 매수인 목록에서 등록하고자 하는 매수인을 클릭합니다. 아래의 자금조달계획 등록 상세화면이 나타납니다.

- ④ 다수의 매수인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매수인이 리스트로 나타나게 됩니다.

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 등록.

자금조달계획대상 물건 총금액 [투기과열지구]	900,000,000 원	매수자 자금조달계획 합계	0 원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	-----

매수인 목록

성명	주민(법인)등록번호	주소	전화번호	제출구분	자금합계
임매수	2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	010-	-	0
이매수	3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	010-	-	0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닫기

2.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등록 방법

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 등록.

자금조달계획대상 물건 총금액 [투기과열지구]	1,000,000,000 원	매수자 자금조달계획 합계	0 원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	-----

매수인 목록

성명	주민(법인)등록번호	주소	전화번호	제출구분	자금합계
이매수	6501012222222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08길 12341234	02-3333-3333	-	0

자금조달계획

자금조달계획	자금조달계획자명	이매수	제출구분	● 제출 ○ 매수인별도제출
자기자금	금융기관 예금액	0 원	주식·채권 매각대금	0 원
	증여·상속	0 원	현금 등 그 밖의 자금	0 원
		<input type="checkbox"/> 부부 <input type="checkbox"/> 직계존비속 (관계: _____) <input type="checkbox"/> 그 밖의 관계 (_____)		<input type="checkbox"/> 보유 현금 <input type="checkbox"/> 그 밖의 자산 (종류: _____)
부동산 처분대금 등	0 원	소계	0 원	
차입금 등	금융기관 대출액 합계	0 원	주택담보대출	0 원
	기존 주택 보유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미보유 <input type="checkbox"/> 보유 (_____ 건) *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만 기재	신용대출	0 원
			그 밖의 대출	0 원
	임대보증금	0 원	회사지원금·사채	0 원
그 밖의 자입금	0 원	소계	0 원	
<input type="checkbox"/> 부부 <input type="checkbox"/> 직계존비속 (관계: _____) <input type="checkbox"/> 그 밖의 관계 (_____)				
합 계	0 원		대출종류: _____	

조달자금 지급방식	총 거래금액	0 원
	계좌이체 금액	0 원
	보증금·대출 승계 금액	0 원
	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	0 원
		(지급사유: _____)

입주계획	<input type="checkbox"/> 본인입주 <input type="checkbox"/> 본인 외 가족입주 (입주 예정 시기: _____ 년 _____ 선택 월)	<input type="checkbox"/> 임대 (전 월세)	<input type="checkbox"/> 그 밖의 경우 (재건축 등)
---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제출인

성명(법인명)	(개인)	구분	공인중개사
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	전화번호	_____ - _____ - _____
주소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03길	검색	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등록

닫기

① 위의 화면은 자금조달계획서 최초 작성 화면입니다.

② 자금조달계획서는 아래와 같이 제출구분을 선택할 수 있으며, 매수인별도 제출의 경우 매수인이 직접 인터넷에 접속하거나(공인인증서 필요)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제출구분	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제출	<input type="radio"/> 매수인별도제출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③ [참고] 표를 참고하여 각 항목에 대한 값을 입력합니다.

④ 제출인은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는 제출인에 대한 정보를 표기합니다.

참고

자금조달계획서 항목별 작성 참고사항

□ 자금조달계획서 항목별 작성 참고사항

항목	상세항목	세부내용	
자기자금	금융기관 예금액	예금(적금)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유 중인 자금	
	주식·채권 매각대금	주식(채권)매도액	주식·유가증권 등 매각으로 조달하는 자금
		이에 준하는 자금	이에 준하는 자금
	증여·상속 등	가족 등 증여·상속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·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	
	현금 등 기타	보유 중인 현금	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보유 중이던 현금
		펀드/보험 금융상품 해지 등	예금(적금)이 아닌 금융상품 투자자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
		이에 준하는 자금	타인에게 대여한 자금 등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등
	부동산 처분대금 등	타 부동산 매도액	타 부동산을 매도하여 조달하는 자금
		기존 보증(전세)금	기존 보증(전세)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
		중전부동산 권리가액	재건축 등으로 발생한 중전 부동산 권리가액 등
이에 준하는 자금		부동산등의 매각(기존 임대차 보증금 회수) 등을 통하여 조달하는 자금	
차입금 등	금융기관 대출액	주택담보대출	금회 취득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실행(승계) 자금
		신용대출	위의 주택담보대출 이외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자금
		그 밖의 대출	타부동산 담보대출 등 그 밖의 금융기관 대출액 및 종류 기재
		금융기관 대출액 중 주택담보대출액을 기재한 경우	금회 취득하는 주택은 제외하고 그 외 주택을 보유 여부에 √ 체크, 보유란에 √ 체크한 경우 보유 중인 주택의 수를 기재 (분양권, 입주권 등 권리상태의 주택을 포함하여, 부부공동명의 등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 건별로 산정하여 기재)
	임대보증금	현 임차인 전세(보증)금 승계	현 임차인 전세금을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하는 금액
		신규 임대차 계약	금회 취득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
	회사지원금·사채	법인/개인사업자 등 제3자에게 대여하는 자금	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 및 소속된 회사 등의 주택자금 대여금 등 (상환기간 등이 약정된 자금)
그 밖의 차입금	제3자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대여하는 자금	가족/친인척 등으로부터 대여하여 조달하는 자금 (상환기간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대여금)	
입주계획	본인입주	본인이 입주할 예정인 경우	주민등록상 가족과 함께 입주하는 경우
	본인 외 가족입주	본인 외 가족 입주 예정인 경우	주민등록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입주하는 경우 (ex. 분가한 자녀가족, 본인의 부모만 입주 등)
	임대(전월세)	입주하지 않고 임대할 계획인 경우	제3자 등에게 임대할 경우
	그 밖의 경우 (재건축 등)	입주 또는 임대 이외	재건축/재개발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행사 등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등
자금지급방식	계좌이체 금액	은행 등 금융기관 이체지급 방식	증빙가능한 금융기관 이체지급 방식으로 지급하는 금액
	보증금·대출금 승계	기존 대출금·임대차 보증금 승계	매도인의 기존 대출금·전세보증금 승계하는 금액
	현금 등 기타지급	현금 등 기타자산 지급	계좌이체 또는 승계한 금액이 아닌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 및 그에 대한 지급사유를 기재